

대구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2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D

피 고 E

소송대리인 F

변론 종결 2021. 1. 12

판결 선고 2021. 1. 2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가. 피고와 G 사이에 2019. 9.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는 G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33896호로 마친 지분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인정 사실

가. G은 2003. 12. 23.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5.경부터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20. 2. 3. 현재 원고에 대하여[드사용금액 3,363,207원, 수수료 307,738원, 연체료 33,412,009원 합계 41,082,954원의 카드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래 H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I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8. 10. 29. 9분의 2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G 앞으로 2018.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9. 9. 10.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3389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G에 대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G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 된다.

####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의 채무초과상태 사실을 몰랐고,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남편과 피고가함께 이룬 재산으로서 피고가 계속 살아야 할 집이며,G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를 보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살피건대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뒤집기 부족하고,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경대

별지